

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5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동욱,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철성,
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
유정희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채수지,
최민규, 허 훈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소방활동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위험순직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일반순직 소방공무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음. 이에 일반순직 소방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순직 또는 공상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을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.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사상소방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순직소방공무원: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
2. 공상소방공무원: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, 제4조의2 따른 공무원 재해로 인해 공무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사상소 방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사망한 사람(이하 “순직소방공무원”이라 한다) 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원 부상·질병이 인정된 사람(이하 “공상소방공무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1. 「소방기본법」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에 따른 소방활동,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의 직무 수행 활동</p> <p>2. 「소방기본법」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·훈련 활동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사상소 방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순직소방공무원: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</p> <p>2. 공상소방공무원: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, 제4조의2 따른 공무원 재해로 인해 공무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</p>

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2조(정의)	○	· ‘공사상 소방공무원’의 정의가 *확대되어 조례에 따른 지원(자녀장학금 ¹⁾) 비용 추가 발생 * (기존) 위험순직공무원 → (변경) 위험순직 + 일반순직 공무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(안 제2조)

나. 전제

- 장학금 지급 사례가 적어 현재 통계 또는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일반순직 소방공무원(연 1명²⁾)에 자녀(1명³), 순직 당해 15세⁴⁾)가 있고, 향후 4년제 대학교까지 휴학 없이 진학한다고 전제함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
라. 방 법

-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자료(통계, 사업진행사항 등) 참조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125,000천원(연평균 25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일반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	15,000	25,000	27,000	28,000	30,000	125,000
소계(a)	15,000	25,000	27,000	28,000	30,000	125,000

- 1) 서울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시행규칙('24. 10월 제정)에 따라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에게 별도 제공되는 지원사업은 ‘자녀장학금’이며, 현재까지 대학생 자녀 2명을 대상 2024년 1회(총 8,000천원) 지급하였음
- 2) 최근 10개년 연평균 일반순직 소방공무원수('15~'24) : 1명
- 3)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1인 평균 자녀수 : 1명
- 4)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평균 자녀 나이 : 15세

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○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비용 : 총 125,000천원

- 산 식 : 현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지원비 + 신규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지원비
= 95,000천원 + 30,000천원

- 세부내역 ※ 자녀 나이(학교, 학년)는 추계 기간 첫 해 기준

▶ 현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자녀(8명) 지원비⁵⁾ : 총 95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학교	학년	연도별 지급비용						비고
		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계	
1	고등학생	3	2,000	4,000	4,000	4,000	4,000	18,000	
2	초등학생	6	1,000	2,000	2,000	2,000	2,000	9,000	
3	초등학생	4	1,000	1,000	1,000	2,000	2,000	7,000	
4	대학생	2	4,000	4,000	4,000	-	-	12,000	
5	고등학생	1	2,000	2,000	2,000	4,000	4,000	14,000	
6	초등학생	6	1,000	2,000	2,000	2,000	2,000	9,000	
7	중학교	1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	
8	대학생	1	-	4,000	4,000	4,000	4,000	16,000	'27년 복학예정

▶ 신규 일반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지원비 : 총 3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학교	학년	연도별 지급비용						비고
		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계	
1	중학교	2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	
2	중학교	1	-	2,000	2,000	2,000	2,000	8,000	
3	초등학교	6	-	-	2,000	2,000	2,000	6,000	
4	초등학교	5	-	-	-	2,000	2,000	4,000	
5	초등학교	4	-	-	-	-	2,000	2,000	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담 당 관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5)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연간 지급기준(「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	중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	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
연간지급액 (1회 지급액)	1,000	2,000	4,000